

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

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- 가. 공 사 명 : 2026년 큰나무가꾸기사업(상송지구)
 나. 공사현장 : 구미시 일원
 다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70일
 라. 사업개요 : 붙임 내역서 참조
 마. 공 사 비

(단위:원)

추 정 금 액	기초금액			관 급 자 재
	계	추정가격	부가가치세	
109,412,000	109,412,000	99,465,455	9,946,545	0

합계 (A값)	국민건강 보험료	국민연금 보험료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퇴직 공제부금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안전관리비	품질관리비
6,596,314	1,958,415	2,587,614	257,335		1,792,950		

※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,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.

2. 견적방식

- 가. 총액견적, 전자입찰,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.

3. 견적서 제출 및 개찰

- 가. 제출기간 : **2026. 07. 29.(수) 10:00 ~ 2026. 08. 03.(월) 10:00**
 나. 개찰일시 : **2026. 08. 03.(월) 11:00**
 다. 개찰장소 : 구미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

4. 견적서 제출자 참가자격

- 가.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)이 **구미시**인 업체로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

-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
 나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」에 의한 **산림사업법인(숯가꾸기 및 병해충방제)**등록을 필한 업체
 ※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제출일(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 다.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,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5. 낙찰자 결정 방법

- 가. 낙찰자로 결정은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』(행정안전부예규) 및 『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』(행정안전부예규)에 따릅니다.
 나. 동일가격입찰(견적제출)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,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.
 다.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.

※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.
 ※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.(별도 통보 없음)

6. 견적(입찰)의 무효

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』 제3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』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.

7.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

- 가.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.
 나.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.
 다.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의5 및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3조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

여할 수 없습니다.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【붙임1】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
8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

- 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」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. 또한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「**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**」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「**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9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대금청구시 2.5%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.
- 나.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, 특수조건,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, 설계서,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.
- 다.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- 행정안전부 예규 (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)
- 1)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**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“국민건강보험료 등”)**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.
 - 2)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(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),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.
 - 3) 그 외 **환경보전비,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,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** 등도 관

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- 라. **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**입니다.
- 마. 전자입찰 이용안내 :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☎1588-0800)
- 바. 입찰결과 안내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(나라장터 www.G2B.go.kr)
- 사.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pps.go.kr>)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“자료실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,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**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**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(투찰)하시기 바랍니다.
- 자.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,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(☎054-481-0727)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차. 기타 문의 사항은 구미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(☎054-481-0727)로 문의 바랍니다.

2026년 07월 28일

구미시산림조합장

**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
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**

1. 「관세법」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
2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,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「조세범 처벌법」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
3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,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
4. 「조세범 처벌법」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·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
5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·공제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

상호: 대표자: (인)

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

주 소 :
상 호 :
대표자 : (인)